

2024년도 특화연구소 플랫폼 데이터셋 구축 연구과제 RFP

※ 본 과제는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의 연구비로 진행하여, 과제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은 특화연구소의 공동연구원으로 등록 필수 (5공에 포함).

I. 2024년도 특화연구소 플랫폼 데이터셋 구축 과제 지원 규모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분야	과제수	예산	과제당 연구비	연구기간
특화연구소 플랫폼 데이터셋 구축	영상/이미지	3	90	30	6개월
	생체신호	3	90	30	6개월
	병리	3	90	30	6개월
	유전체	3	90	30	6개월
	텍스트/정형	3	90	30	6개월
	자유 (기타)	5	150	30	6개월
합계		20	600		

- 각 분야의 과제 수는 지원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II. 추진 일정

구분	일정
신청접수	'24.12.16.(월) ~ '24.12.27.(금)
과제심사	'24.12.30.(월) ~ '25.01.03.(금)
과제선정	~ '25.01.03.(금)
연구개시	'25.01.13.(월) ~

※ 상기 일정은 병원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II. 신청절차

가. 신청 기간: '24.12.16.(월) ~ '24.12.27.(금) 18시

나. 신청방법(※ 붙임 CRIS 공모과제 신청방법 참조)

1) CRIS 접속 <https://cris.snuh.org>

- 최초 ID(사번)/PW(생년월일 6자리 또는 주민번호 뒤 7자리)

(로그인 관련 문의 : 연구전산실(02-2072-1614))

2) [CRIS]-[공모과제관리]-[공모과제신청] 메뉴를 통해 연구계획서 업로드

※ CRIS 접속이 불가능한 보라매병원 연구교수 및 분당서울대병원 진료/연구교수는 아래 이메일로 연구계획서 제출

- CRIS 접속 불가능한 연구자 연구계획서 이메일 제출 : 02596@snuh.org

다. 주의사항

- 1) 연구책임자는 신청 전, 지원분야와 지원자격을 반드시 확인 할 것
- 2)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연구계획서 업로드 및 수정 불가
- 3)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선정자에게 이메일로 개별 통보 함

IV. 지원 계획

1. 2024년도 특화연구소 플랫폼 데이터셋 구축 과제

1-1. 지원 목적

인공지능 분야의 혁신적인 발전과 함께 보건의료 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의료 인공지능 분야의 특성상 모델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고품질의 정제된 데이터셋의 확보가 필수적임. 이에 특화연구소에서는 서울대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정제하여 인공지능 연구를 위한 양질의 데이터셋 구축을 지원하여, 의료 인공지능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2. 기본 방침

- 가.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병원 내 생성되는 의료 데이터를 추출하여 적절한 비식별화 처리 및 데이터 클렌징 과정을 통하여 AI 학습 등 최신 연구 기술의 적용에 최적화된 임상적 의미를 가지는 고품질 데이터셋 개발을 목적으로함
- 나. 생성된 데이터는 추후 특화연구소 플랫폼에 게재될 예정이며 서울대병원 주최 MAIC (Medical AI Challenge) 등에 활용될 수 있음
- 다. 연구종료 후 연구 과정에서 생산된 데이터는 의무적으로 서울대학교병원 데이터사이언스연구부로 재기탁하여 병원의 자산으로 하며, 특화연구소 데이터 플랫폼 등을 통해 데이터 공유계약을 함으로써 외부(해외) 기관과 공유함
- 라. 연구성과의 특화연구소 플랫폼 공유를 위해 연구자는 가명 처리 적정성 심의 내용을 포함한 DRB 심사를 완료해야 함
- 마. 연구 수행에 필요한 경비만을 지원하며, 부득이 기자재 등의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이 필요함
- 바. 각 분야의 선정 과제 수는 지원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 데이터 생성 및 정제 과정에서 데이터사이언스연구부의 데이터 큐레이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음 (문의: help-ds@snuh.org, 4628)

1-3. 연구비 지원 규모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분야	과제 수	총예산	과제당 연구비
특화연구소 플랫폼 데이터 구축 과제	영상/이미지	3	90	30
	생체신호	3	90	30
	병리	3	90	30
	유전체	3	90	30
	텍스트/정형	3	90	30
	자유 (기타)	5	150	30
합계		20	600	

1-4. 연구 기간

연구 기간은 6개월이며 연구종료 후 6개월 이내 성과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연장을 허용하지 않음.

1-5. 신청자격

서울대학교병원(강남센터 포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겸직·기초교수, 임상(병원법인, 기금), 공공임상, 융합의학, 진료, 연구교수로서 신청마감일 기준 재직 중인 자

1-6. 신청 자격 및 제한

- ① 신청자는 본인을 연구책임자로 하는 1개의 과제에 한하여 신청 가능
- ② 기수행중인 원내과제, 정부과제, 위탁과제와 중복되는 주제의 과제로 신청 불가
- ③ 공고일 기준 재직 중인 자에 한하며, 신청 연구기간 중 연간 3개월 이상 장기출장 또는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연구자(퇴직, 휴직, 파견(본원 요일별 순환근무자 제외)는 신청 불가
- 2025.12.31. 이전 정년퇴임 예정자 신청 불가
- ④ **본 과제는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의 연구비로 진행하여, 과제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전원 특화연구소의 공동연구원으로 등록 필수. (5공에 포함) 불가 시 신청 불가**

1-7. 연구비 작성 기준

가. 연구비는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등으로 구분하며, 각 항목별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간접비, 연구수당 미계상)

나. 산정기준

항목	내용	산정기준
인건비	외부연구원 인건비 (※병원 직원은 지급 불가)	
연구시설·장비비	연구기자재비 - 연구시설 및 장비(기자재)의 설치·구입·임차, 사용경비 및 운영비 (※단가 300만원 이상 물품 구매시 자산등재요청서 제출 필수)	실비
연구재료비	① 연구재료제작비 ② 시약 및 재료비 - 시약 및 재료 구입비, 시험 분석 서비스 비용 등 ③ 전산처리비 및 전산소모품비 - 전산처리 및 관리비, 관련 시스템 사용료, 소모품비 등 * 위 세세목은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혁신법 및 원내규정 등 관련 규정 내에서 수정·추가하여 기재 가능	실비
연구활동비	① 국외여비 ② 국내여비 ③ 인쇄및복사비(수수료포함) ④ 택배, 우편, 운송료 ⑤ 전문가활용비 ⑥ 도서관헌구입비 ⑦ 학회·세미나참가비 ⑧ 논문게재료 ⑨ 회의관련 부대비용 ⑩ 기술정보수집비 ⑪ 시험분석료 ⑫ 회의비(식사및다과) ⑬ 세미나개최비(식사및다과) ⑭ 야근식대(초과근로) ⑮ 사무용품비 ⑯ 연구실환경유지비(비품) ⑰ 사무용소프트웨어 및 기기 ⑱ 연구용 소프트웨어 활용비 * 위 세세목은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혁신법 및 원내규정 등 관련 규정 내에서 수정·추가하여 기재 가능	실비

1-8. 연구과제 선정 기준

가. 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함

- 1) 연구과제의 창의성과 타당성
- 2) 연구방법의 합리성
- 3) 연구수행능력

- 4) 연구결과의 예상되는 기여도 및 활용도
- 5) 생산되는 데이터셋의 활용도

1-9. 연구과제 선정 절차

특화연구소장이 위촉하는 심사위원들이 특화연구소에서 정한 심사평가서에 의거하여 연구계획서를 심의 및 최종 선정함

1-10. 연구비 관리 및 지급

- 가. 연구비는 특화연구소장이 중앙 관리함으로써 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나. 연구비는 연구책임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특화연구소에서 관리하며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을 위해 특화연구소에 요청하여 집행함.
- 다. 연구비는 최초 연구계획서에 의거하여 집행하며, 연구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출에 한해 인정함(※개인 용도의 전자기기, 서적 구매, 인건비 등 지출은 금함)

1-11. 연구비 지급의 중단 및 회수

- 가.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집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
 - 1)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2) 연구수행에 있어서 소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3) 연구비를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
 - 4) 연구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허위로 연구 보고를 한 때
 - 5) 논문, 단행본 또는 결과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때
 - 6) 연구비 신청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 7)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나. 연구를 중단하는 경우 중단 사유와 연구비 사용여부에 따라 임상연구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연구책임자는 아래와 같이 원내 연구과제 공모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공모 신청 제한 기간 : 위원회 의결일자로부터 기산)

구 분	연구비 미사용 (전액 반납)	연구비 사용(잔액 반납)
정당한 사유 있음	제한 없음	1년간 신청 불가
정당한 사유 없음	1년간 신청 불가	2년간 신청 불가

1-12. 연구과제 관리사항

- 가.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를 전문학술지에 발표하거나 단행본으로 출판 또는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생산된 데이터셋을 연구종료 후 6개월 이내 서울대학교병원으로 기탁해야 함**
- 나. 특화연구소장이 연구결과물의 보관을 요구하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다. **제출기한 내에 결과물 미제출 시, 추후 원내 연구과제 공모 제한 등의 제제 조치**
- 라.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구내용, 과제명 등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기간 종료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특화연구소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마. **연구기간 변경 및 연장은 불가하며, 연구기간 종료 후에는 연구비 집행을 제한함**

1-13. 행정 관리사항

- 가. 연구결과 생산된 제권리는 직원 직무발명 및 보상규정에 따라 소속부서장을 통해서 신고하며 해당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함
- 나. 연구결과 생산된 발생품(또는 시작품)과 본 연구비로 구입한 고가의 연구기기는 병원 소유로 함 (**※단가 300만원 이상 기자재 구매 시, 자산등재요청서 필수 제출**)
- 다. 연구계획서의 내용으로 이미 학위논문을 제출하였거나, 심사완료 또는 심사 중인 학위논문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연구 계획서로 제출할 수 없음
(※단 연구종료 후에 취득할 석. 박사 학위논문일 경우는 인정)
- 라. 연구계획서 작성 시 연구비의 단가 적용, 사업량 및 물량 산정에 대한 부담함이 연구기간 내에 발견되었을 시에는 즉시 이 부담액을 감액 조치할 수 있으며 또한 연구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시에는 연구책임자는 이 부담액을 특화연구소에 환불 조치하여야 함
- 마.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중 사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연구를 3개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서면 보고하여 특화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기간을 연장하거나, 공동연구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
- 바. 본 계획의 제반사항 중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시는 특화연구소장의 결정에 따름
- 사. 문의처
 - (1) 연구과제 내용 등 관련 문의 : 특화연구소 데이터혁신센터 송은혜 (el9001@gmail.com)
 - (2) 과제 접수 관련 문의 : 특화연구소 지원팀 정근수 (02596@snuh.org)

(끝.)